

## 2021년 제1회 횡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 공고

2021년도 제1회 횡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. 5. 10.

횡성군인사위원회 위원장

### 1. 선발예정인원

시험명	직급	직렬	직류	선발 예정인원	비고
총 계				12명	
2021년 제1회 횡성군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	9급	시설	일반토목	5명	
			건축	3명	
			지적	3명	
		공업	전기	1명	

### 2. 시험방법

가. 제1·2차 시험(병합실시) : 필기시험(과목별 20문제, 4지 택1형)

직렬 및 직급	직류	시험과목		시험시간
		1차	2차	
시설(9급)	일반토목	물리	응용역학개론, 측량	60분
	건축	물리	건축계획, 건축구조	60분
	지적	수학	지적측량, 지적법규	60분
공업(9급)	전기	물리	전기이론, 전기기기	60분

※ 각 과목에서 4할 이상 득점하고,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.

※ 시험문제는 횡성군에서 자체출제하며,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.

## 나. 제3차 시험 : 면접시험(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실시)

※ 평가기준 : 5개 항목(공무원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)

### 3. 응시자격

가. 응시결격사유 등 :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.

※ 적용기준일 :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

#### < 지방공무원법 제31조 : 결격사유 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 〈 지방공무원법 제66조 : 정년 〉

1.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2.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### 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: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〉

-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  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  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  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  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### 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: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〉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## 나. 거주지 제한

- 1) 2021. 1. 1. 이전부터 최종시험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(단,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.)
- 2) 2021. 1. 1.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
※ 위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

다. 응시연령 : 18세 이상(2003. 12. 31. 이전 출생자)

라. 자격(면허)증 제한(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)

직 급	직 렬	직 류	자격(면허)증	비 고
9급	시설	일반토목	산업기사 이상	「공무원임용시험령」제27조 제1항 관련 [별표8] 경력경쟁 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산업기사 이상
	시설	건축		
	시설	지 적		
	공업	전 기		

## 4. 시험 일정

시험 공고일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
2021.05.10.(월)	2021.05.26.(수)	필기시험	2021.06.02.(수)	2021.06.12.(토)	2021.06.15.(화)
2021.05.25.(화) [16일간]	2021.05.28.(금) [3일간]				

※ 시험장소 공고, 합격자 발표 등은 횡성군 홈페이지(<http://www.hsg.go.kr>) [고시/공고]란에 공고할 예정이며, 개별통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.

※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,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 5. 응시원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1. 5. 26.(수) ~ 2021. 5. 28.(금), 09:00 ~ 18:00

나. 접수처 : 황성군청 자치행정과(2층)

다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(FAX 제출 불가)

- 우편주소 : (25220) 강원도 황성군 황성읍 태기로15 황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

◇ 등기우편 접수는 응시원서 제출 마감일(2021. 5. 28.)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, 응시원서 접수 여부는 반드시 사전에 접수처(033-340-2073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라. 제출서류

1) 응시원서[붙임 1] 1부

◇ 사진(2매) :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(3.5×4.5) 탈모 상반신 사진

◇ 응시수수료(5,000원 상당) : 황성군 허가민원과 「황성군 수입증지」구입

- 등기우편 접수 시 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 상당) 또는 응시수수료 동봉

2) 응시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 1부(원본 지참)

3) 주민등록초본 1부(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)

4) 이력서[붙임 2] 및 자기소개서[붙임 3] 1부

5)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[붙임 4] 1부

6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[붙임 5] 1부

7) 가산특전 대상 자격증 사본 1부(원본지참) 또는 자격 취득 확인서 1부

## 6. 가산점 적용

### 가. 취업지원대상자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·18민주유공자

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,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,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10% 또는 5%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-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※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(보훈상담센터 ☎1577-0606)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나. 공통적용 가산점(자격증 소지자)

-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(통신·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)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%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(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.

구 분	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			
통신· 정보처리 분야	정보관리기술사, 정보처리기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, 정산계산기조작응용기사, 정보보안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보안산업기사,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	1%	정보기기운용기능사, 정보처리기능사	0.5%
사무관리 분야	컴퓨터활용능력 1급	1%	워드프로세서(舊 1급), 컴퓨터활용능력 2급	0.5%
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.

※ 자격증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.

※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(舊)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.

(舊 워드프로세서 2, 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)

## 다. 가산점 적용 관련 유의사항

-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적용 대상 자격증(사본)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시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자격증 사본 등을 원서 접수처에 FAX(033-340-2553) 등으로 송부하시고, 접수처(033-340-2073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원서접수처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산대상 자격증 취득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가산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
## 7.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

- 가. 응시희망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- 나. 응시원서에 집 전화, 휴대폰 번호 등 정확한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며, 연락처를 잘못 기재한 경우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다.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.
- 라.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착오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마.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, 불합격자에 한하여 요청 시 원본 서류는 반환하여 드립니다.
- 바.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시험을 취소하고,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- 사.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횡성군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하며, 합격 사실에 대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
- 아.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공무원채용신체검사, 응시자격 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자.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차.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진출될 수 있습니다.
- 카.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횡성군 홈페이지에 공고(게시) 됩니다.

◇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담당(033-340-207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